

교직원 복지 규정

제정 2013. 11. 1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가족이며 복지 종류별로 구분된다.

제3조(종류) 교직원 복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자녀 학비보조
2. 교직원 경조사 화환 발송
3. 교직원 자녀 장학금
4.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
5. 교직원 출퇴근 스쿨버스
6. 동아리 활동 운영경비

제4조(교직원 자녀 학비보조) 본 대학 교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교육비는 연봉 외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(교직원 경조사 화환 발송) 본 대학 교직원 및 그 가족에게 경·조사가 발생 하였을 시 발송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혼 : 본인 및 자녀
2. 사망 : 본인, 배우자, 부모(배우자부모), 자녀

제6조(교직원 자녀 장학금)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직계비속인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세부내용은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7조(직원 교육훈련비 지급)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및 업무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수강을 할 경우 수강료의 50%를 지원한다. 단, 지원금액은 1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.

제8조(교직원 출퇴근 스쿨버스)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출퇴근 버스를 1회 이상 운행하며, 운행노선 및 시간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동아리 활동 운영경비) 본 대학의 교직원이 친목도모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